교통약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 콘텐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령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설치기준과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자가운전 지원, 전용주차구역 활용 등 실질적인 혜택과 운수종사자가 갖춰야 할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의무 등 효율적인 이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약자 1
1. 교통약자 알아보기 4
1.1. 교통약자의 이해 4
1.1.1. “교통약자”란? 4
1.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7
1.2.1.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7
2. 교통수단 이용하기 12
2.1.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이용 12
2.1.1. 버스 12
2.1.2.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5
2.2. 철도, 항공기 및 선박 이용 19
2.2.1. 도시철도, 철도 및 광역전철 19
2.2.2. 항공기 및 선박 24
2.3. 자가용 이용 27
2.3.1. 자가운전 지원 27
2.3.2. 전용주차구역 30
3. 이동편의시설 활용하기 35
3.1. 여객시설 이용 35
3.1.1. 내부시설 35
3.2. 보도 및 보행우선구역 이용 39
3.2.1. 보도 39
3.2.2. 보행우선구역 42
4. 이동환경 개선하기 47
4.1.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47
4.1.1.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47
4.2. 교통약자 이동환경 실태점검 50
4.2.1. 실태조사 및 이동편의시설 점검 50

1. 교통약자 알아보기

1.1. 교통약자의 이해

1.1.1. “교통약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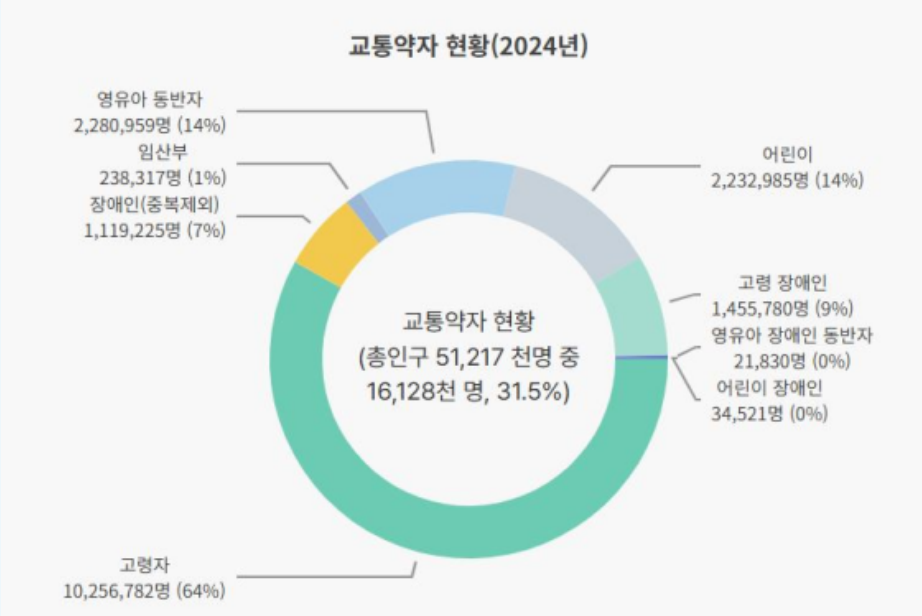
“교통약자” 범위 및 유형

“교통약자”란?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 교통약자 현황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장애인(중복 제외) = 등록장애인 중 고령자, 영유아, 어린이 인구 제외

* 영유아(0~7세), 영유아 1인당 동반자 1명으로 산정

* 어린이(8~12세), 고령자(65세 이상)

* 임산부 통계 부재로 출생 인구로 대체

<출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https://dtis.kotsa.or.kr/), 실태조사 결과-교통약자 현황 참조>

교통약자 장애유형

▪ 교통약자의 장애유형은 크게 이동장애, 인지장애, 소통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7쪽 참조).

이용자 구 분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일시 장애인	외국인	짐 운반자	지체 장애인	시각·청각·정신 장애인
장애유형	이동	●	●	●	●	●		●	●	
	인지	●			●					●
	소통	●			●		●			●

이동장애인의 특성

▪ 이동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지체장애인,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고령자, 임산부 및 환자 등이 있으며 이동 및 여러 가지 신체동작에 제한을 가집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 지체장애인은 목발, 보행보조도구, 휠체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다른 행동의 특성과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차이를 보이며, 어린이는 작은 신체치수로 인한 어려움, 고령자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가집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 사고에 따른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이동장애로 분류됩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인지장애인의 특성

▪ 인지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전맹인, 약시자 등의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어린이 및 고령자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전맹인을 위한 청각 및 촉각을 이용한 시설과 약시자의 잔존시력을 활용한 시설이 있으며, 인지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의 구성과 반복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소통장애인의 특성

▪ 소통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써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및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 소통장애인은 수화, 그림 또는 보조도구 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 **"서울동행맵(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소개**

• 서울동행맵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로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맞춤 길 안내부터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와 편의시설 등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동행맵 앱 사용 화면>



서울동행맵 홈 화면



교통약자서비스 안내



보행불편사항 안내

<출처: 서울시 교통실 보도자료(2024. 11. 1.),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정식 출시" 및 서울동행맵 앱 내 화면 참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별표 1의4).

구 분	내 용	
	교통이용정보 제공	편의 제공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탑승보조 서비스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 한국수어·통역서비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 공중팩스 • 탑승보조 서비스(발권지원,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등)

▪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교통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1.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1.2.1.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이란?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교통수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함)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의 역사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함)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주체

▪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교통수단

▪ 교통수단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

이동편의시설 /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저상형)	○	○	○	○		○		○	○	
	시내버스(일반형)	○	○	○	○		○		○	○	
	시내버스(좌석형)	○	○	○	○		○			○	
	농어촌버스	○	○	○	○		○		○	○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철도차량		○	○	○	○	○	○	○		○	○
궤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철도		○	○	○			○		○	○	○

▪ 다만, 궤도차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1. 목적지가 하나이고,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거장·지주 등 외부의 시설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경우: 안내방송
2. 목적지가 하나이고, 별도 인력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3. 목적지가 하나인 경우: 목적지 표시
4. 입석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

여객시설

▪ 여객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2호).

이동편의시설 /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접근로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
철도 역사	○	○	○	○	○	○	○	○	○	○	○
궤도 정거장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철도역사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검사장	여객탑승교	대기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철도 역사	○	○	○	○	○	○	○	○				○
궤도 정거장	○	○	○	○		○		○				○
환승시설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도로

▪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3호).

이동편의시설 /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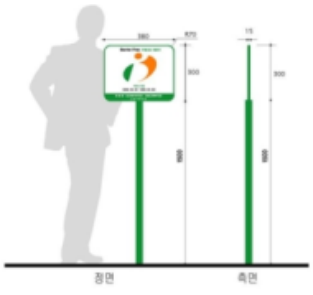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1항).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물 및 지역은 각각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3조 및 별표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인증명판 | 인증안내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bf)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수단 이용하기

2.1.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이용

2.1.1. 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대수
   √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시(특별시와 광역시 제외)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함)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1. 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 이용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저상버스 예약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방법 소개

<(서울)서울동행맵 앱을 이용한 저상버스 예약>

- 서울동행맵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로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예약 및 버스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여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합니다. ①노선 및 승·하차 정류소 예약 후 → ②이용자가 해당 정류소에 30m 범위 이내로 도착하면 → ③예약 정보(승·하차 예약 정보)가 버스로 전달 → ④버스기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휠체어 리프트 등 이용준비, 안내방송, 정차합니다.

<서울동행맵 앱 사용 화면>

<table>
<tr><td></td><td></td><td></td></tr>
<tr><td>저상버스 승차예약</td><td>예약현황 확인</td><td>예약 취소 및 하차예약</td></tr>
</table>

<출처: 서울동행맵 앱, 설정-약관 및 정책-튜토리얼 다시보기 참조>

<(대전)위버스 앱을 이용한 저상버스 예약>

- 위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저상버스 예약 전용 서비스로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유아차 등 보조기구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예약 및 버스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앱에서 출발지 및 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합니다. ①노선 및 승·하차 정류소 예약 후 → ②이용자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용여부 선택→ ③예약 정보(승·하차 예약 정보)가 버스로 전달 → ④버스기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휠체어 리프트 등 이용준비, 안내방송, 정차합니다.

<위버스 앱 사용 화면>

<table>
<tr><td></td><td></td><td></td></tr>
<tr><td>저상버스 승차예약</td><td>탑승 보조기구 선택</td><td>예약 확인</td></tr>
</table>

<출처: 위버스 앱, 앱 내 화면참조>

※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는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정부 또는 관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내 이동편의시설 이용

휠체어 승강설비

▪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같은 면에 있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4)].

▪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가 가급적 낮춰져 있으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4)].

<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4~25쪽 참조

교통약자용 좌석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되며,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이 교통약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5)].

▪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정차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5)].

<교통약자용 좌석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8쪽 참조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7)].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31쪽 참조

※ 그 밖에 버스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특별교통수단(콜택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의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시·군"이라 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함)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9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동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며,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

※ 다만,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3.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구 분	내 용	
	관할구역 안	관할구역 밖의 지역
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함)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함) •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함) •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방법이 각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https://dtis.kotsa.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택시(장애인콜택시)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 소개

<(서울)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서울특별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로운 외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 이용 방법은 ①콜접수[이용시민이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또는 서울동행맵 앱을 통해 차량 신청] → ②배차(자동배차 차량 연결) → ③운행(차량이 이용시민 출발지로 이동 → 탑승 → 목적지까지 운행) 과정을 거쳐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http://calltaxi.sisul.or.kr), 소개 및 안내 – 장애인 콜택시란? 참조>

Q.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참조).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

▪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을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 이용방법 소개

<(서울)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서울특별시는 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제약 없는 일상을 지원합니다.
- 이용 방법은 ①콜접수[이용시민이 전화(☎1600-4477), 인터넷 또는 복지콜 앱(시각장애만 해당)을 통해 차량 신청] → ②배차(자동배차 차량 연결) → ③운행(차량이 이용시민 출발지로 이동→ 탑승→ 목적지까지 운행)과정을 거쳐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bucall.org/), 장애인 복지콜 이용안내 참조>

엄마아빠택시

▪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엄마아빠택시를 도입하여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엄마아빠택시 이용방법 소개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서울특별시는 외출 시 챙겨야 할 짐이 많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시트가 구비된 전용 차량과 이동 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자의 외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용 방법은 ①지원신청(몽땅정보만능키) → ②자격결정 → ③포인트 지급 → ④선택한 운영사(앱) 회원가입을 하여 호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내 손안에 서울(2025. 2. 10.), "카시트 갖춘 ´서울엄마아빠택시´ 최대 12만원 지원 받으세요" 참조>

임산부 콜택시

▪ 정기 검진 등 병원 방문이 잦은 임산부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임산부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여 임산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산부 콜택시 이용방법 소개

<(부산)마마콜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부산광역시는 임산부의 병원진료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이용 방법은 ①인터넷 회원가입(부산시설공단 두리발) → ②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등 필요서류 제출 → ③심사승인 → ④두리발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시설공단 두리발 홈페이지(https://www.duribal.co.kr/), 임산부콜택시 이용안내 참조>

※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콜, 엄마아빠택시 및 임산부 콜택시는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철도, 항공기 및 선박 이용

2.2.1. 도시철도, 철도 및 광역전철

교통약자에 대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 보장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전용구역 운영

▪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되어 있으며,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 지정되어 있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철도의 이용 보장

▪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좌석 예약체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 우선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과 같으며,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3항).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도시철도 이동식 안전발판

▪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간격이 넓은 역사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동식 안전발판을 비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이용정보–이용고객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승·하차 안내 참조].

▪ 도시철도 승·하차 편의를 위한 이동식 안전발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역사 또는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이용정보–이용고객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승·하차 안내 참조].

철도 교통약자 도우미 서비스

▪ 철도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KTX 등을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행하는 SR은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이용방법 소개
>
> <장애인·노약자 도우미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SR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보호자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고객,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열차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①장애인·노약자 도우미 신청(열차이용 30분 전) → ②역무원(→열차승무원) 안내 → ③도착역까지 열차승무원 안내 → ④열차승무원(→역무원) 안내 → ⑤도착역 도우미가 나가는 곳까지 안내하는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출처: 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korail.com/), 고객서비스 –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참조>

철도 우선예약 서비스

▪ 철도의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맞춤형 우대예약(원콜서비스)을 운영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간편하게 철도를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이용방법 소개

<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원콜서비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65세 이상의 경로고객,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객 등을 대상으로 철도고객센터(☎1588-7788)로 전화 시 상담원을 우선 연결하고 전화상으로 결제·발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①서비스 신청(역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제시) → ②철도고객센터(☎1588-7788)로 전화 → ③전화상으로 결제·발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korail.com/), 고객서비스 –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참조>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 내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용 좌석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퍼센트)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 4)].

›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 4)].

<교통약자용 좌석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0~41쪽 참조

Q.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으로 일반 승객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좌석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방정부의 조례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5조의2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와 양보의 차원에서 해당 좌석을 비워두거나 양보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도시철도의 임산부 배려석>



사진 출처: 서울시, 교통-버스·지하철·택시-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안내" 참조

출입구 통로

▪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 7)].

<출입구 통로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3쪽 참조

철도차량 내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승강설비

▪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 4)].

<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33쪽 참조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이 4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이 3개 이상,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2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 5)].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 5)].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및 안내표시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35쪽 참조

※ 그 밖에 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2. 항공기 및 선박

공항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패스트트랙)

▪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를 위해 출국 우대서비스를 운영하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및 항공사 병약승객 등 교통약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패스트트랙) 이용방법 소개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의 출국 편의를 위하여 출국 우대출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동반 3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은 고령자·유소아의 경우 ①우대출구 입구 여권 제시 → ②여권 스캔 및 대상자 인증 후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임산부·항공사 병약승객의 경우 ①항공사 체크인 시 증빙자료 제시 후 교통약자 스티커 수령 → ②우대출구 입구 스티커 제시(보안요원이 증빙자료 확인 가능) 후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출국절차-보안검색-교통약자/다자녀 가구 출국 우대서비스 참조>

교통 및 주차 서비스

▪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 동반 고객을 대상으로 수화기를 들면 터미널 내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편의를 제공하는 헬프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무료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내 카운터 위치에 따라 가까운 단기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과 제1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차량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전용정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공항 내 서비스

▪ 인천국제공항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출국객을 위하여 전동차와 휠체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용 전동차 대기 공간 및 휠체어, 유모차 대여 가능 공간으로,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동반 여객 등)들이 출국 전 편히 대기할 수 있는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 ※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는 공항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려는 공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내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

▪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1)].

내부시설

▪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2)].

▪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2)].

<항공기 내부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및 기내용 휠체어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4쪽 참조

선박 내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승강설비

▪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4)].

▪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4)].

<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7쪽 참조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명당 1곳 이상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5)].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5)].

<교통약자용 좌석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8쪽 참조

출입구 통로

▪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8)].

※ 그 밖에 항공기 및 선박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자가용 이용

2.3.1. 자가운전 지원

운전교육 및 면허 취득

자가운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7조제1항).

장애인 대상 운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 장애인의 원활한 자가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대상 운전교육 소개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는 (서울)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등에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20시간 운전교육(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을 지원합니다.
- 접수 방법은 ①지원센터 방문 → ②교육 접수 → ③교육 진행 → ④시험 응시의 순서로 진행되며, 합격 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oad.or.kr/), 주요사업-운전면허사업-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운영 참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이용>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장내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도로연수교육) 및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를 지원합니다.
- 접수 방법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내원 또는 전화(☎02-901-1552~4) 및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교육지원 홈페이지(https://www.nrc.go.kr/education), 교육소개-장애인 운전교육 참조>

Q.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할 때도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로서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5)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또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한다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 참조).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소개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의무 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교육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은 ①고령운전자교육 예약(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및 적성검사 상담 → ②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중 선택하여 치매검사 등 실시 → ③ 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 진행 → ④정기적성검사(갱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참조>

차량 구입 및 운전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차량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

▹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후단).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11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2호).

▪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원 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운전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소개

• 보조공학기기의 분류 체계에는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수동 휠체어, 동력 구동 이동기기, 휠체어 액세서리, 휠체어 착석용 액세서리 등을 지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1조 및 별표 5 참조).

<운전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예시>

		
좌측 엑셀페달	휠체어 슬로프	회전시트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4쪽, 5쪽, 33쪽, 56쪽 및 65쪽 참조>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에, 차량구조 변경(튜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 또는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 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예시>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245쪽 참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구 분	내용	
	제출서류	제출처
기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단, 국가유공자등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2항).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3항).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3항·제4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8).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제2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가족배려주차장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 일부 지방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서울특별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예시>





출처: 내 손안에 서울(2019. 7. 29.), “8월부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 참조

<(서울)가족배려주차장>

• 서울특별시는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1항).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①「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그 동반인, ②「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③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 동반인입니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2항).

<가족배려주차장의 예시>



일반형



확장형

출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도 제3호 서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에도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수칙은 각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동편의시설 활용하기

3.1. 여객시설 이용

3.1.1. 내부시설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여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여객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승강장·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보행접근로

▪ 여객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1)].

▪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2)].

▪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3)].

<보행접근로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5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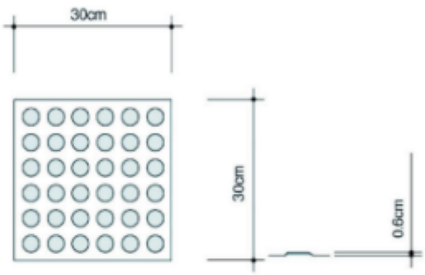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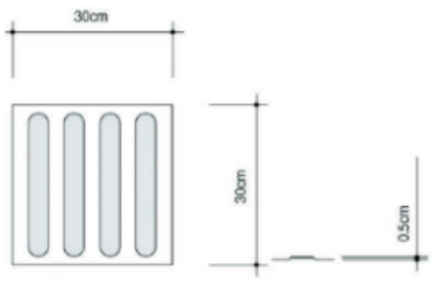
▪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차목 1)].

▪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차목 3)].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차목 3)].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8쪽 참조

유도 및 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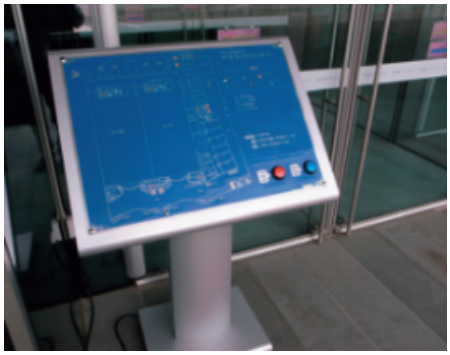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함께 적어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카목 1)].

▪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카목 2)].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여객시설에 설치된 안내소, 승강기, 화장실 및 출입구의 설치위치와 여객시설 출입구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안내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카목 5)].

<유도 및 안내시설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0쪽 참조

임산부 휴게시설

▪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서목 1)].

<임산부 휴게시설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00쪽 참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역사 승강장 및 버스정류장에서의 이용편의시설

개찰구

▪ 개찰구는 1개 이상이 자동개폐식이며, 개찰구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하목).

<개찰구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3쪽 참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울타리 또는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거목).

<여객자동차터미널 승강장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4쪽 참조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너목 4)].

▹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너목 5)].

▪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너목 6) 및 9)].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6쪽 참조

버스정류장 대기시설

▪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버목 2)].

▪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을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함께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을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버목 3)].

▪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함)에는 목적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안팎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버목 4)].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9쪽 참조

※ 그 밖에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보도 및 보행우선구역 이용

3.2.1. 보도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

교통약자의 보행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 ※ "차마"란 ①자동차, ②건설기계, ③원동기장치자전거, ④자전거, ⑤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은 제외), ⑥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보행자 통행의 우선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 등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장애인에 대한 보도 이용 방해 및 훼손 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제1호).

도로 내 이동편의시설 활용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제3호, 제1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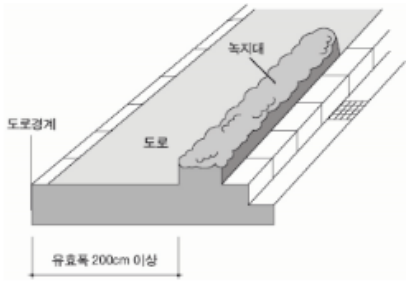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 1)].

›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 4)].

▪ 보도 또는 접근로에 가로등·전봇대·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 4)].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04·10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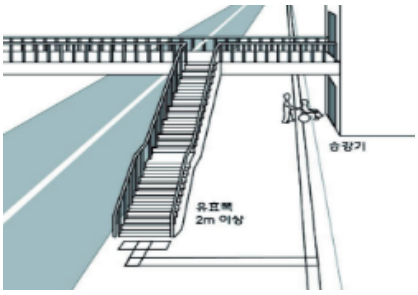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나목 1)].

▪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나목 2)].

▪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나목 3)].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14쪽 참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냅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마목 1)].

▪ 수동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해 조작하는 장치가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마목 2)].

▪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마목 4)].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17쪽 참조

※ 그 밖에 도로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2. 보행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같음)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제1항).

▪ 시장이나 군수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위 1.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제1항).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보도용 방호울타리

도로 점용물의 이설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제1항).

불법시설물의 정비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제1항).

보행우선구역 내 보행안전시설물 활용

속도저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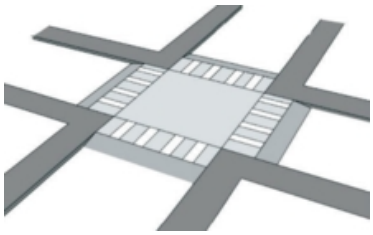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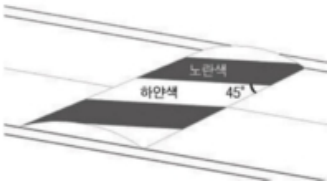
▪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 1)].

▪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

▪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 1)].

<속도저감시설(고원식 교차로 및 과속방지턱)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22·127쪽 참조

횡단시설

▪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1)].

▪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보행섬(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장소)을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1)].

<횡단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및 보행섬)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29·130쪽 참조

교통안내시설(보행자안내표지판)

▪ 보행우선구역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

▪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3호나목).

<교통안내시설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31쪽 참조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보행우선구역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4호가목).

▪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냅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4호나목).

보행경로 안내장치

▪ 보행우선구역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 횡단 등을 위해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6호가목).

▪ 보행 경로에 기반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보행자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접근하여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6호다목).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34쪽 참조	

※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 내 보행안전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동환경 개선하기

4.1.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4.1.1.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교육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 교통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

구 분	내용
교육의 횟수	• 1회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교육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2항).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구 분	내용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의 횟수	• 연 1회	• 연 1회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3항).

›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5항).

구 분	내용
교육의 횟수	• 연 1회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교육 내용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승무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 교육

승무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1항, 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저상버스등(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의 승무원
5.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

▪ 승무원 및 운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7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구 분	내용
교육의 횟수	• 연 1회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교육 내용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육 방법 (3가지 중 택1)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체험교육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6항).

> ※ 그 밖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https://dtis.kotsa.or.kr/)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교통약자 이동환경 실태점검

4.2.1. 실태조사 및 이동편의시설 점검

교통약자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교통약자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1항).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5. 보행환경 실태
6.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방법 및 시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3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교통복지지표 조사 및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제2항).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

▪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제4항).

>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https://dtis.kots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연구·개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5.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6. 보행환경의 개선
7.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8.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제1항).

▪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및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이동편의시설 검사

▪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8조제3항).

▪ 일부 지방정부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는 경우 장애인을 검사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동편의시설의 검사반 구성 및 검사요원 임명·위촉>

-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전단).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 후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제1항).